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0026)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 5. 2.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5. 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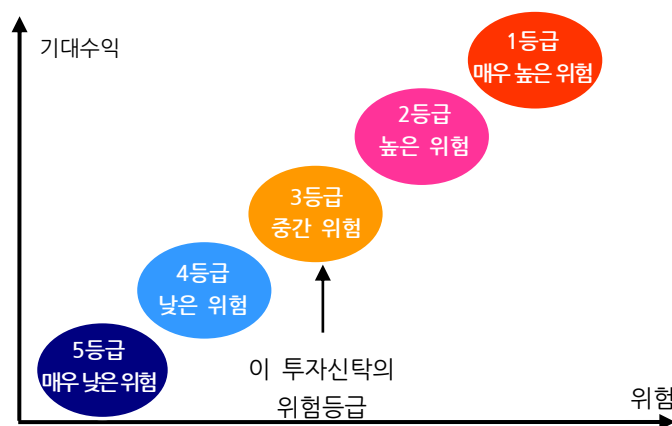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1) 듀레이션(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만기) 전략 기본적으로 1년~1.5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은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① 수익롤곡선 전략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할인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② 스프레드(두 채권간의 금리차이) 매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3) 개별종목분석을 통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 및 차익거래 기회 등을 통한 이익 추구합니다. (4) 시장 예측을 통한 단기적인 방향성 투자 자제합니다.	80% 이하

트러스트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30% 이하
---------------------	--	--------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4.03.31. 현재,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정인기	1971년	책임 운용역 (상무)	7	9,540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 97.07 ~ 02.05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02.06 ~ 04.10 신영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팀 04.11 ~ 09.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10.01 ~ 11.05 대우증권 Prop. Trading 부 11.05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여종훈	1974년	책임 운용역 (부장)	28	31,378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99.07~08.04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8.05~10.12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1.01~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안홍익	1976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16	13,571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03.01~05.05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5~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이무영	1981년	부책임 운용역 (과장)	6	9,03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07.12~10.07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운용2팀 10.07~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13.04.19~ 14.04.18	12.04.19~ 13.04.18	11.04.19~ 12.04.18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자	5.29	6.74	2.07		
비교지수	3.76	1.45	1.34		
A	4.42	5.86			
비교지수	3.76	1.45			
C	3.90	5.33	1.23		
비교지수	3.76	1.45	1.34		
Ce	4.11	5.56	5.26		
비교지수	3.76	1.45	1.34		
Cp	4.12				
비교지수	3.76				

(주 1)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년×65%) + (KOSPI 지수×30%) + (Call 금리×5%)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펀드코드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A0026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	A0027	제한 없음	없음	
Ce	A0028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I	A0029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W	A0030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S	AH59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p	AQ41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S-P	AQ41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 회사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보수 비용	증권거래 비용
A	0.300	0.500	0.020	0.017	0.002	0.839	0.846	0.180
C	0.300	1.000	0.020	0.017	0.002	1.339	1.346	0.180
Ce	0.300	0.800	0.020	0.017	0.002	1.139	1.146	0.180
I	0.300	0.500	0.020	0.017	0.002	0.839	0.846	0.180
Cp	0.300	0.830	0.020	0.017	0.002	1.169	1.176	0.180
S	0.300	0.250	0.020	0.017	0.002	0.589	0.596	0.180
S-P	0.300	0.200	0.020	0.017	0.002	0.539	0.546	0.180
W	0.300	0.000	0.020	0.017	0.002	0.339	0.346	0.18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19 ~ 2014.04.18]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 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19 ~ 2014.04.18]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6) I 클래스, S 클래스, S-P 클래스, W 클래스는 A 클래스의 기타 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324	526	1,1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8	326	530	1,117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1	437	755	1,6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41	439	759	1,665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0	373	645	1,4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20	375	649	1,431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275	478	1,0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9	278	482	1,072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382	662	1,4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23	385	666	1,466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94	338	7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63	196	341	765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7	177	309	6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57	180	313	702
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6	112	195	4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36	114	199	449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2) S 클래스는 10 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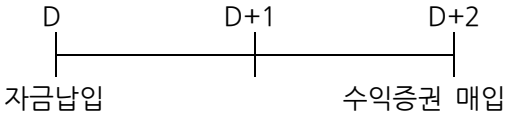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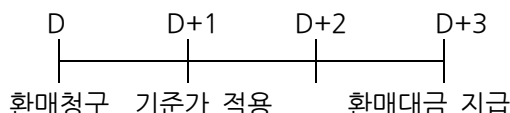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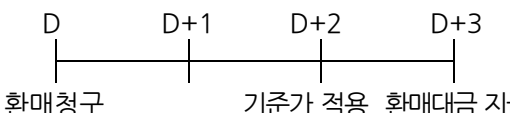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IV. 요약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항 목	제3기	제2기	제1기
	(2014.04.18)	(2013.04.18)	(2012.04.18)
운용자산	4,407,866,188	6,585,319,953	155,460,714
유가증권	4,312,574,738	6,452,989,355	147,748,213
현금 및 예치금	4,461,450	6,380,598	102,501
기타 운용자산	90,830,000	125,950,000	7,610,000
기타자산	9,695,976	14,743	307,061
자산총계	4,417,562,164	6,585,334,696	155,767,775
기타부채	119,129,431	353,257,886	1,956,588
부채총계	119,129,431	353,257,886	1,956,588
원본	4,221,700,614	6,232,076,810	153,811,187
이익조정금	76,732,119	0	-2,206,169
자본총계	4,298,432,733	6,232,076,810	151,605,018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13.04.19-14.04.18)	(12.04.19-13.04.18)	(11.04.19-12.04.18)
운용수익	340,202,617	67,548,451	3,879,134
이자수익	3,194,997	668,948	117,384
배당수익	132,108,503	0	0
매매/평가차익(손)	204,654,958	66,862,953	3,407,143
기타수익	244,159	16,550	354,607
운용비용	86,108,956	14,304,435	704,683
관련회사보수	85,908,932	13,413,498	697,073
매매수수료	34,284	1,647	0
기타비용	165,740	889,290	7,610
당기순이익	254,093,661	53,244,016	3,174,451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
년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 받았음)

이름
학년
성명

고객 설명

서명 또는 (인)